
재한외국인 인터넷 본인확인 가이드라인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용)

2009. 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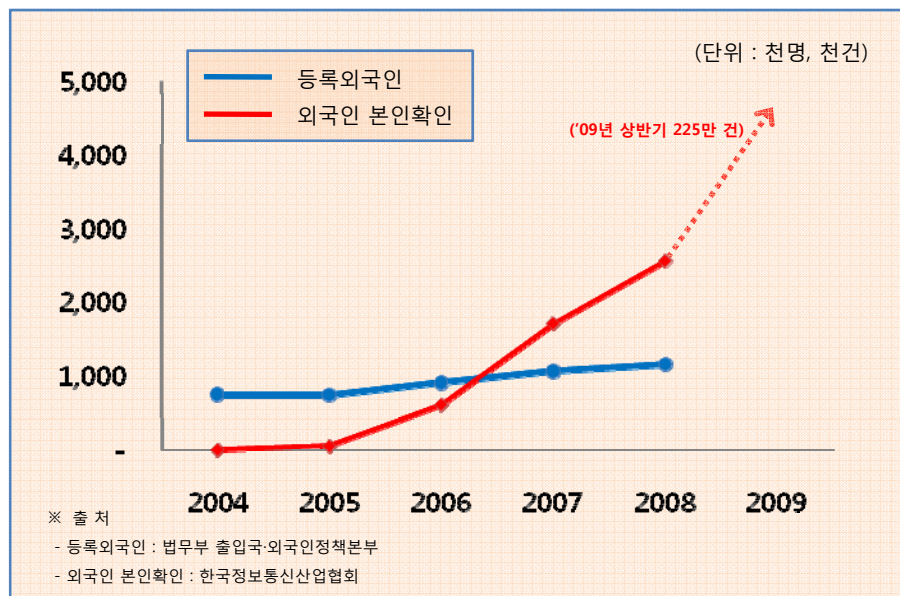
※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Friendly Digital Korea” 프로젝트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배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등록외국인은 115만 명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이용 빈도 또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본인확인 추이〉



그러나, 국내 인터넷사이트마다 외국인 회원가입 제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사이트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회원가입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도 재한외국인의 국내 인터넷 이용 환경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재한외국인들도 한국의 앞선 디지털 문화를 손쉽게 누리게 하고,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이의 소통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인터넷 본인확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상 재한외국인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구축한 “외국인 본인확인서비스” 도입 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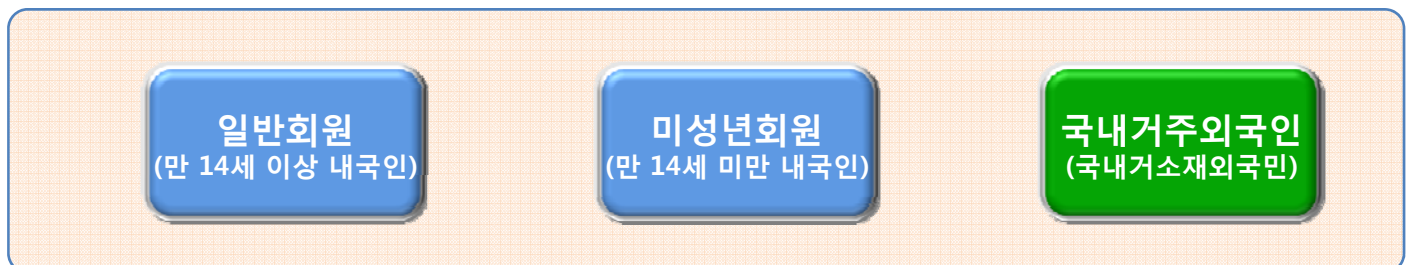
2. 회원가입 구분

재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포함) 또는 여권(국내 입국 시 등록된 여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본인확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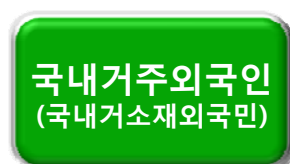
구 분	확인정보	대 상	비 고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포함)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 등록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여 권	- 국 적 - 여권번호 - 생년월일 - 성 명	- 미등록외국인	- 입국 시 등록된 여권

〈신분증 별 본인확인 구별 예시〉



※ 위 구별은 예시로서, 사이트 성격에 따라 법인가입자 및 해외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에 맞게 자율 적용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통한 본인확인 방법이 상이하므로 선택적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클릭 시, 등록외국인과 미등록외국인 선택 화면 표시

◎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포함) ○ 미등록외국인(여권)
⇒ 선택 시 각 신분증 별 본인확인 화면 표시

3.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받은 재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뒷 7자리의 첫째 자리가 5,6,7,8이며, 생년월일 중 월일이 0000인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이트운영자는 오류 처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성명은 영문대문자(재외국민은 한글), 숫자 등으로 최대 39Byte까지 입력될 수 있습니다.

영문소문자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사이트운영자는 영문입력의 경우 영문대문자로 입력되도록 자동 설정하여 소문자 입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본인확인 예시〉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미등록외국인(여권)

본인확인을 위해 아래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과 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

성 명
(한글/영문대문자)

WANG HAO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73□□□□

- △○○○○○○○

확 인

- 성명 : 한글, 영문대문자, 숫자 등 최대 39Byte까지 입력되도록 구성
- 생년월일 : 일부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중 □□□□이 0000인 경우 있음
- 외국인구분자 :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가 5,6,7,8로 내국인과 구별 가능

4. 여 권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입국절차를 마친 재한외국인은 국내입국 시 행사한 여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은 여권에 기재된 영문대문자 3자로 구성된 국가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국가코드는 새로이 생성되는 등 많은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콤보박스 보다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권번호는 여권에 기재된 여권번호("영문+숫자" 또는 "숫자")를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명은 영문대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최대 39Byte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확인 시에는 반드시 성(Surname)을 먼저 입력하여야 합니다.

영문소문자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사이트운영자는 영문입력의 경우 영문대문자로 입력되도록 자동 설정하여 소문자 입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숫자 8자리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YYYY/MM/DD의 형태로 입력을 받아야 하며, 입력란을 콤보박스로 구성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 생년월일 중 월일이 0000인 경우가 있으므로 00월과 00일도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권 본인확인 예시>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미등록외국인(여권)

본인확인을 위해 여권에 기재된 아래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 적
(Nationality)

CHN

여권번호
(Passport Number)

SC1234567

성 명
(Name)

WANG HAO

※ 성(Surname)을 먼저 입력

생년월일
(Birth of Date)

1981

년

□□

월

□□

일

Ex) 24 AUG 1981

⇒ 1981년08월24일

확 인

- 국적 : 영문대문자 3자리
- 여권번호 : "영문대문자+숫자" 또는 "숫자"로 구성
- 성명 : 한글, 영문대문자, 기호, 숫자 등 최대 40Byte까지 입력되도록 구성
- 생년월일 : 생년월일 중 □□□□이 0000인 경우 있음

5. 본인확인 오류 안내

외국인 본인확인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류발생 원인과 해결방법을 팝업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본인확인 오류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법 예시입니다.

〈외국인 본인확인 오류 및 해결방법 예시〉

본인확인이 안되세요? 다음을 확인해보세요!

1.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상에 표기된 성명 또는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에 기재된 번호와 성명을 그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명입력 시에는 영문대문자로 입력하여야 합니다.(단,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한글)

2. 적법한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적법한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3.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 현재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포함)들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4. 법무부 DB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발급 후 다음날부터, 여권의 경우 입국 후 2~3일 후부터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경과 후에 본인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여권을 갱신한 경우

⇒ 대한민국 입국 심사 시 행사한 여권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을 갱신, 분실하여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인 경우

⇒ 1~5까지 모두 문제가 없음에도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의 일시적인 장애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본인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 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용자에게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해당국가 신분증 등) 회원가입 처리됨을 명확히 안내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외국계카드 결제 관련

인터넷쇼핑몰, 유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외국계카드 결제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기 이용단계(본인확인, 약관동의 시)에서 외국계카드가 결제지원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8.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및 효력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홈페이지 제작업체, 웹호스팅업체 등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가이드라인 미 적용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외국인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용대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 기 타

이 가이드라인은 2009년 8월에 제정되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개선의견 및 문의는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국번없이 1335) 또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5, phj@kait.or.kr)로 연락바랍니다.

끝으로, 이 가이드라인의 작성을 위하여 귀중한 의견을 주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